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공동전시 계약관련 (재)간송미술문화재단의 채권양도에 관한 협조요청의 건

○ 『서울디자인재단과 간송미술문화재단 공동전시 재계약 체결 완료보고』와 관련
입니다.

○ 위 호와 관련하여, (재)간송미술문화재단이 [바람을 그리다: 신윤복·정선] 전시에
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드리고 조
치하고자 합니다.

- 아 래 -

가. 건 명 : 공동전시 계약관련 (재)간송미술문화재단의 관람료 채권양도에 관한
협조 요청의 건

나. 내 용 : 간송미술문화재단과 서울디자인재단이 체결한 공동전시재계약에 의거,
간송C&D(간송미술문화재단 업무 대행 위임)와 중소기업은행이 [바람
을 그리다: 신윤복·정선] 전시와 관련하여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에 따라
2017.11.24.부터 전시 종료시점(2018.5.25.)까지 전시 관람료를 중소기
업은행에 배분을 요청함

다. 경 위 :

- ① 2017.11.24.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(붙임4-1) 통지받음
- ② 2017.11.26. 간송C&D(신도성 대표이사)가 DDP경영단에 협조 요청 회의 개최
- ③ 2017.12.06. 서울디자인재단 담당변호사 자문 의뢰
 - 채권양도의 효력 및 향후 대응방안
 - 향후 관람료 정산관련 입금통장 지정 관련
- ④ 2017.12.12. 담당변호사(김태운) 질의 회신(붙임3)
 - 간송미술문화재단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더라도 간송C&D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
로 통지받은 간송C&D와 중소기업은행간의 채권양도계약서는 그 효력이 없음
 - 서울디자인재단이 간송미술문화재단의 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 여부를 검토할 경
우, 간송미술문화재단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서를 서울디자인재단에 제출하여야
하며, 위임받은 간송C&D도 동의요청서를 함께 받는 것이 바람직함
 - 종전과 동일하게 관람료를 '간송C&D'에 배분하여야 하지만, 자칫 중소기업은행으
로부터 이중 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양도와 관련된 제반 문제가 정리

되기전까지는 관람료 배분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함

⑤ **2017.12.22. 간송미술문화재단으로부터 협조요청 e-mail(붙임5)**

- 필요서류 첨부(간송미술문화재단의 공동전시 관람료 채권양도 협조요청 공문 1부 및 간송미술문화재단과 간송C&D의 동의서 각1부)

라. 조치사항

- 간송미술문화재단의 '공동전시 관람료 채권양도에 관한 협조 요청' 공문과 간송미술문화재단 및 간송C&D의 동의서를 수령함에 따라 채권양도 협조 요청에 응함
- 2017.11.24.부터 전시 종료시점(2018.5.25.)까지 전시 관람료를 채권양수인인 중소기업은행 관리계좌에 배분함

- 붙임 1. 협조요청 공문 1부
2. 동의요청서 1부
3. 재단변호사 자문의견 1부
4. 채권양도 계약서(간송C&D-중소기업은행) 1부
4-1. 채권양도통지서 1부
5. 협조요청 e-mail 1부
6. 동의요청서(간송C&D) 1부
7. 관련기안 1부. 끝.

선임 대표이사	01/04 이명은 01/05 이근	전시사업팀장	01/04 김수정	상생본부장	01/05 최구환	DDP경영단장	01/05 유석윤
협조자							
시행	전시사업팀-12 (2018.01.05.)			접수			
우	03098	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(종로 6가)				/	
전화번호	02-2153-0096	팩스번호 2153-0010		/ mylee@seouldesign.or.kr		/	부분공개(6)